부인과 초음파의 급여

4대 중증질환이 다음과 같이 의심되는 경우에 초음파 검사는 급여대상임.

- 다음 -

- 가. 증상 · 징후 또는 타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어 해당 질환을 의심하는 경우
- 나. 4대 중증질환이 의심되고, 특이적인 과거력이 있어 실시하는 경우
- 다. 무증상환자이나 의심되는 질환이 고위험군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단, 검진 목적으로 무증상 환자에게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초음파검사는 비급여대상임)
- 라. 중증질환 산정특례가 만료된 환자가 증상, 징후 또는 타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어 질환의 재발을 의심하여 실시하는 경우
- Q.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중 질환별 급여대상에 해당되는 환자는 질환에 관계없이 초음파검사의 급여가 가능한가?

초음파검사는 산정특례 대상 중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에 급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의 경우에도 산정특례 적용이 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급여대상 관련 합병증으로 초음파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급여함.

Ex> Breast Ca환자가 Tamoxifen 사용시 부작용으로 인해 자궁내막암의심시 자궁초음파 <mark>보험</mark>

Ex> Tyroid Ca환자가 여성골반초음파를 원하는 경우 비보험

Q.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자의 타 상병에 대한 진료분의 본인부담률은 ?

의거 조제하는 약국 약제비도 10% 적용) (2005-08-26)

• 산정특례 대상 상병 및 관련 합병증에 대한 진료는 특례대상(10%) 임.

Ex> CIS환자의 경우 CIS와 관계없이 PID로 오면 초음파는 비보험

- 산정특례 대상과 전혀 관련 없는 타 상병(기왕증 포함)의 진료는 해당되지 않음. 다만, 동일 진료과목(입원)
 - ·동일의사(외래)에게 해당상병과 동시에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특례대상임. (동일의사 · 동일처방전에
- 1. 유도초음파: 결합행위(시술, 치료, 검사 등)와 함께 시행하는 초음파 (예: 양막내양수주입술시 초음파, 자궁내막생검 시 초음파)

* 원래 임신부 산전 초음파와 함께 유도초음파도 급여화 예정이었으나 4대 중증질환자 (암, 뇌혈관, 심장,

- 희귀난치성 질환) 및 의심자만 유도초음파 급여 적용 하기로하고, 그 외에는 비급여 적용 2. 부인과 초음파: 4대 중증질환자 및 의심자만 급여대상
- * 부인과 초음파 급여화 시점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 계획 없음
- 3. 부인과 초음파로는 endometrial Bx시 R/O endometrial malignancy하고 정밀/도플러와 유도초음파
- II 따로 따로 청구 가능합니다. AUB:POSTMENOPAUSE시에도 R/O endometrial cancer함으로써 정밀/도플러 초음파 산정 가능합니다. 난소암의증과 HSIL이상의 자궁경부암의증으로 conization Bx를 실시할때 초음파가 보험될것 같습니다.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시 접근방법에 따른 수가 산정여부

나944라 여성생식기 초음파는 여러 접근방법(경직장, 경질, 경회음부)으로 실시되는 검사를 반영한 수가로 접근 방법을 불문하고 해당 검사 소정점수를 산정함

여성생식기 초음파 수가 산정방법

일반은 해부학적 이상이 없이 기능적 문제가 있는 경우(단순 질 출혈)에 산정하고, 정밀은 해부학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여성생식기 종괴, 여성생식기 기형, 종양)에 산정하며, 자궁내 생리식염수와 같이 약제를 검사 목적으로 주입한 경우 나944라(1)'주'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유도초음파 산정방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라 급여목록 중 제2장(검사료) 또는 제9장(처치 및 수술료 등) 에 해당될 경우 산정함.

단순유도초음파 산정 시 특정내역 기재방법

단순초음파 또는 유도초음파를 시행한 경우 세부내역을 "JS013"에 기재함.(기재형식) 해부학적 구분코드/수가코드(5단코드)/구체적 사유

(예시**2)** 초음파 유도하 갑상선 생검: 유도초음파(Ⅱ) 청구 ⇒ "D/C8591/"

(예시1) 중심정맥관 삽입시 확인: 단순초음파(Ⅱ) 청구 ⇒ "L/O1650/"

(예시3) 초음파 유도하 유방 수술전 tattooing: 유도초음파(I) 청구 \Rightarrow "E/ /수술전 tattooing"

(예시4) 초음파 유도하 자궁내막소파검사 : 유도초음파(II) 청구 ⇒ "I/R4521/자궁내막암의심으로 초음파 유도하조직검사함."

산부인과학회 세부급여기준 Q&A

- 1. 어떤 환자들에게 부인과 초음파를 보험으로 해드려야 하나요?
- 부인암 환자 또는 부인암 의심자가 초음파 보험대상입니다.
- 2. 어떤 환자가 부인암 의심자인가요? •

기본적으로 의사의 판단에 따릅니다. 따라서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아래의 경우에 부인암 의심자로 볼 수있습니다.

- 1) 타 병원에서 골반종괴가 발견이 되어 치료를 위해 전원 된 경우
- 2) 골반종괴, 외음부종괴, 질 출혈, 복부 팽만, 복수, 심한 체중 감소, 서혜부 림프절 종대 등 부인암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
- 3. 같은 환자가 초음파를 여러 번 하면 계속 보험 적용이 되나요?

부인암 중증환자로 등록된 분들의 경우 회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임상 증상이 있어 부인암 의심자로 보험적용을 받은 경우엔 같은 이유로는 1회만 인정됩니다.